#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정(안)

#### 1. 제안이유

○ 2022.12.08. 회사 교섭단체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22년 임금협약 체결」중, '청원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미산입'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청원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미산입 (기존: 청원휴가 기간 중의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 [별표 2]의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중, 비고 삭제 (삭제 내용: 사유발생 5일 전후 본인이 지정하여 사용가능)

####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2022년 12월 08일 체결 「2022년도 임금협약」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절 차 : 이사회 부의 → 이사회 의결 → 시행

## 취업규칙 개정 규정(안)

취업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청원휴가)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청원휴가) ②청원휴가 기간이 휴일(휴무일 포함)과 중복 시에는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를

"제31조(청원휴가) ②청원휴가 기간이 휴일(휴무일 포함)과 중복 시에는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한다.

다음과 같이 부칙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2월 08일부터 적용한다. "

다음과 같이 별표를 개정한다.

"[별표 2]

###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대 상	기 간	비고
결혼	1. 본인	5일	*
	2. 자녀	3일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회갑	1. 본인 또는 배우자	1일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회갑	1일	
사망	1. 배우자 및 자녀(배우자 포함)	5일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5일	
탈상	1. 배우자	1일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기타	1.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1일	*
	2.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1일	*
	3.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 시	3일	

※ 비고란 ★ : 사유발생 5일 전후로 본인이 지정하여 사용가능"

### 중

" 표 우측의 '비 고'전체"

### 및

"※ 비고란 ★ : 사유발생 5일 전후로 본인이 지정하여 사용가능"을 삭제한다.

## 취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근거
제31조(청원휴가) ②청원휴가 기간이 휴일(휴무일 포함)과 중복 시에는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31조(청원휴가) ②청원휴가 기간이 휴일(휴무일 포함)과 중복 시에는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금협상 체결 ('22.12.08.)로 인한 내용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일부터 시행하 되, 2022년 12월 0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 취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근거
[별표 2]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sup>[별표 2]</sup>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임금협상 체결	
구 분	대 상	기 비 간 고	구 분	대 상	기 간	('22.12.08.)로 인한 내용
결혼	1. 본인2. 자녀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일 ★ 3일 ★ 1일	결혼	1. 본인       2.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일 3일 1일	변경 '비고'
회갑	1. 본인 또는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회갑	1일 1일	회갑	1. 본인 또는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회갑	1일 1일	해당내용 삭제
사망	1. 배우자 및 자녀(배우자 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사망	1. 배우자 및 자녀(배우자 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탈상	1.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1일	탈상	1.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1일	
기타	1.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2.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3.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 시	1일 ★ 1일 ★ 3일	기타	1.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2.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3.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 시	1일 1일 3일	
※ 비고:	란 ★ : 사유발생 5일 전후로 본인이 지정하여 ㅅ	· 용가능				